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99 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 강선영·강대식·곽규택

고동진 • 이인선 • 이달희

김대식 • 조지연 • 이만희
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'손해'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,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, 소극적 손해,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.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.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·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,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(안 제751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장래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, 직업(장래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한다), 경력,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 뿐 아니라 국민의 평균여명,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 사회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장래의 손해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7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751條(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)	第751條(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장래의 손해
	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
	의 연령, 직업(장래의 병역의무
	이행기간을 포함한다), 경력,
	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 뿐
	아니라 국민의 평균여명, 경제
	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
	사회 ·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
	야 한다.